

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(안)

2013. 10. 7.

국회안전행정위원회

【 목 차 】

1. 감사의 목적	1
2. 감사기간	1
3. 감사실시 대상기관	1
4. 감사반의 편성	3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	5
6. 주요감사사항	7
7. 감사방법	7
8. 서류(자료)제출·보고·증인 등 출석 요구	7
9. 감사진행순서	9
10.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	9

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(안)

1. 감사의 목적

헌법 제61조, 국회법 제127조,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, 2014년도 예산안·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.

2. 감사 기간

2013. 10. 14(월) ~ 11. 2(토) [20일간]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

가. 위원회선정대상기관 (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~3호)

- 1) 중앙선거관리위원회
- 2) 안전행정부
- 3) 경찰청
- 4) 소방방재청
- 5) 지방자치단체
 - ① 서울특별시
 - ② 경기도
 - ③ 대구광역시
 - ④ 강원도
 - ⑤ 충청북도
 - ⑥ 충청남도
 - ⑦ 전라북도
 - ⑧ 전라남도
 - ⑨ 경상북도
 - ⑩ 경상남도

6) 공공기관

- ① 공무원연금공단
- ② 한국정보화진흥원
- ③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
- ④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
- ⑤ 도로교통공단
- ⑥ 한국소방산업기술원

나. 본회의승인대상기관 (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)

- 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
- ② 경기도지방경찰청
- ③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
- ④ 강원도지방경찰청
- ⑤ 충청북도지방경찰청
- ⑥ 충청남도지방경찰청
- ⑦ 전라북도지방경찰청
- ⑧ 전라남도지방경찰청
- ⑨ 경상북도지방경찰청
- ⑩ 경상남도지방경찰청

다. 업무현황보고서 제출요구기관(주무부처 국감시 기관장 배석)

1) 안전행정부 산하

- ① 한국지방행정연구원
- ② 대한지방행정공제회
- ③ 한국지방재정공제회
- ④ 한국지역진흥재단
- ⑤ 한국지역정보개발원
- ⑥ 지방공기업평가원
- ⑦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
- ⑧ 새마을금고중앙회
- ⑨ 새마을운동중앙회
- ⑩ 한국자유총연맹
- ⑪ 한국지방세연구원

2) 경찰청 산하

- ①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
- ② 경찰공제회

3) 소방방재청 산하

- ① 한국소방안전협회
- ② 대한소방공제회
- ③ 소방산업공제조합
- ④ 한국소방시설협회

4. 감사반의 편성

가. 중앙감사반

○ 위원장, △ 간사
(새)새누리당, (민)민주당, (비)비교섭

대 상 기 관	감사위원장	감사위원	사 무 보 조 직 원	
중앙선거관리위원회	○김태환 위원장	△황영철 위원(새)	수석전문위원	손충덕
안전행정부		강기윤 위원(새)	전문위원	임재주
경찰청		김기선 위원(새)	입법조사관	류승우
소방방재청		김영주 위원(새)	"	임석기
서울특별시		박덕흠 위원(새)	"	김준규
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		박성호 위원(새)	"	조문상
경기도		유승우 위원(새)	"	신은호
경기도지방경찰청		윤재옥 위원(새)	"	김복현
공무원연금공단		이재오 위원(새)	"	양창석
한국정보화진흥원		진 영 위원(새)	"	전종인
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		△이찬열 위원(민)	"	조흥연
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		김민기 위원(민)	"	김은영
도로교통공단		김 현 위원(민)	입법조사관보	남정희
한국소방산업기술원		문희상 위원(민)	"	조종오
		박남춘 위원(민)	실무관	이은희
		백재현 위원(민)	"	권영미
		유대운 위원(민)		
		이해찬 위원(민)	속기주무관	
		진선미 위원(민)		
		이상규 위원(비)	정책연구위원	
			위원보좌진	

나. 지방감사반

(새)새누리당, (민)민주당, (비)비교섭

감사반	대 상 기 관	감사반장	감사위원	사 무 보 조 직 원	
제 1 반	대구광역시	김태환 위원장(새)	황영철 위원(새)	수석전문위원	손충덕
	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		강기윤 위원(새)	입법조사관	류승우
	강원도		김기선 위원(새)	"	조문상
	강원도지방경찰청		윤재옥 위원(새)	"	신은호
	경상북도		이재오 위원(새)	"	양창석
	경상북도지방경찰청		김 현 위원(민)	"	조흥연
	경상남도		박남춘 위원(민)	입법조사관보	조종오
	경상남도지방경찰청		유대운 위원(민)	실무관	이은희
		진선미 위원(민)		속기주무관 정책연구위원 위원보좌진	
제 2 반	충청북도	이찬열 위원(민)	김영주 위원(새)	전문위원	임재주
	충청북도지방경찰청		박덕흠 위원(새)	입법조사관	임석기
	충청남도		박성효 위원(새)	"	김준규
	충청남도지방경찰청		유승우 위원(새)	"	김복현
	전라북도		진 영 위원(새)	"	전중인
	전라북도지방경찰청		김민기 위원(민)	"	김은영
	전라남도		문희상 위원(민)	입법조사관보	남정희
	전라남도지방경찰청		백재현 위원(민)	실무관	권영미
		이해찬 위원(민)		속기주무관 정책연구위원 위원보좌진	
		이상규 위원(비)			

※ 10월 30일 국감시 김기선(1반), 김영주(2반) 위원 감사반 교대
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

가. 중앙감사반

날 짜	감사대상기관	감사장소	감사시간	감사방법
10. 14(월)	안전행정부	정 부 중앙청사	10:00	현황보고 청취, 자 료 요 구, 질 의 등
10. 15(화)	경 찰 청	경 찰 청	10:00	"
10. 17(목)	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	시 경	10:00	"
10. 18(금)	소방방재청	중앙119 구조본부 (남양주)	10:00	"
10. 21(월)	중앙선거관리위원회	국 회	10:00	"
	공공기관(6개 기관 병합실시) - 공무원연금공단 - 한국정보화진흥원 -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-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- 도로교통공단 - 한국소방산업기술원	국 회	중앙선관 위 국감 종료후	
10. 22(화)	서울특별시	시 청	10:00	"
10. 24(목)	경기도	도 청	10:00	"
	경기도지방경찰청	도 경	도청국감 종료후	
10. 25(금) -30(수)	(지방감사)			"
11. 1(금)	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	국 회	10:00	종합감사

나. 지방감사 제1반

날 짜	감사대상기관	감사장소	감사시간	감사방법
10.25(금)	강원도	도 청	10:00	현황보고 청취, 자 료 요 구, 질 의 등
	강원도지방경찰청	도 경	도청국감 종료후	
10.28(월)	대구광역시	시 청	10:00	"
	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	시 경	시청국감 종료후	"
10.29(화)	경상북도	도 청	10:00	"
	경상북도지방경찰청	도 경	도청국감 종료후	"
10.30(수)	경상남도	도 청	10:00	"
	경상남도지방경찰청	도 경	도청국감 종료후	"

다. 지방감사 제2반

날 짜	감사대상기관	감사장소	감사시간	감사방법
10.25(금)	충청북도	도 청	10:00	현황보고 청취, 자 료 요 구, 질 의 등
	충청북도지방경찰청	도 경	도청국감 종료후	
10.28(월)	전라남도	도 청	10:00	"
	전라남도지방경찰청	도 경	도청국감 종료후	"
10.29(화)	전라북도	도 청	10:00	"
	전라북도지방경찰청	도 경	도청국감 종료후	"
10.30(수)	충청남도	도 청	10:00	"
	충청남도지방경찰청	도 경	도청국감 종료후	"

6. 주요감사사항

- 2013년도 예산집행사항
- 2013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
- 2014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
- 소관기관 산하단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
- 기타 현안문제 등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

7. 감사방법

- 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, 자료제출요구, 질의·답변의 방법으로 실시하고, 필요한 때에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.
- 특히, 지방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, 문제점, 애로·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며,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에 중점을 두도록 함.

8. 서류(자료)제출·보고·증인 등 출석 요구

가. 서류(자료)제출요구

- 수감기관은 다음 서류(자료)를 해당기관 감사 5일 전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함.
 - 2013년도 업무현황
 - 2012년도 및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
 - 2012년도 및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
 - 201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

- 2012년도 및 2013년도 감사원감사 · 자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
-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

나. 보고요구

-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, 보고시간은 10분 내외로 하여 감사위원의 질의시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함.
- 업무현황보고 내용
 - 예산집행현황
 - 주요정책(사업) 계획 및 실적
 - 주요현안

다. 증인·감정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

- 수감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국장급 이상의 부서장으로 함.
 - ※ 지방경찰청의 경우, 서울지방경찰청은 기관장과 부장급 이상, 기타 지방경찰청은 기관장과 과장급 이상으로 하고, 공무원연금공단 등 산하단체의 경우에는 기관장과 임원급 이상으로 함.
-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일반증인·감정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하여 증언·감정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음.
-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 등에게 송달되어야 함.

9. 감사진행순서

- 감사개시 선언
- 위원장 인사말씀
- 증인선서
- 업무현황보고 청취(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)
- 질의 및 답변
- 감사종료 선언

10.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

- 결과보고서에는 일반사항(감사의 목적, 기간, 경과 등),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, 건의사항,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.
-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전체회의에서 채택함.